

목포시해수욕장설치사용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

1. 심사경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년 4월 7일 목포시장
- 나. 회부일자 : 2001년 4월 13일
- 다. 상정일자 : 2001년 4월 14일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본 회의(제1차) : 기 획 실 장 박 철 린
- 총무사회위원회 : 문예관광담당관 최 명 호

나. 제안이유

- 목포시 달동 산150-6 번지지선에 외달도 해수욕장을 설치함에 따라 목포시유달해수욕장사용설치조례를 목포시해수욕장사용설치조례로 명칭변경
- 목포시 유달해수욕장 설치사용조례의 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하고
- 관련 조문 및 용어를 구체화하여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코자 함.

다. 주요내용

- 제목변경
 - “목포시유달해수욕장설치사용조례” 를 ⇒ “목포시해수욕장설치사용조례” 로
- 관리대상변경(안 제1조)
 - “목포시 유달해수욕장” 을 ⇒ “목포시 해수욕장” 으로 개정
- 설치장소확대(안 제2조)
 - “유달해수욕장” 에서 ⇒ “유달해수욕장” 과 “외달도 해수욕장” 으로
- 사용허가신청서 삽입(안 제4조)
 - 시설사용허가 신청서 및 사용허가서 서식보완
- 사용기간 보완(안 제5조)
 - 관리시설을 현실에 맞게 조정(풀장제외)하고 사용기간에 관한 규정 보완
- 시설 사용료 및 임대료 요율 조정(안제9조)

· 샤워장 및 탈의실 사용료

현행		개정안	
구분	금액	구분	금액
대인 (단체)	260원 (130원)	대인	1,000원
		군인·학생·청소년	700원
소인 (단체)	130원 (70원)	소인	500원

· 시설물 사용 임대료

현행		개정안	
구분	금액	구분	금액
3㎡	3,000원	3㎡	9,000원

※ 외달도 해수욕장은 제외한다.

· 보트 사용료

현행		개정안	
구분	금액	구분	금액
30분	400원	30분	4,000원
60분	800원	60분	8,000원

· 용어의 정의

현행		개정안	
구분	용어 정의	구분	용어 정의
대인	17세이상	대인	만19세이상 65세미만
		군인	제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군인
소인	16세이하	학생	중·고등학교 재학생
		청소년	만13세이상 만18세이하
단체	20인이상	소인	초등학생 및 만6세이상 만12세이하

3.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4. 위원회 활동

- 제96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2001. 4. 14)
 -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응답
- 제97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2001. 4. 16)
 - 안건검토 및 심사의결

5. 토론요지

- 현재 외달도와 목포 해수욕장에 관광객이 1년에 몇 명이나 찾아오며 우리 시가 해수욕장에 투자한 만큼 가치가 있는가, 현재 시설되어 있는 각종 편의시설이나 앞으로의 도로포장 등 약 35억원 정도를 더 투자해야 하는데, 해수욕장에 대한 보다 치밀한 계획과 검토가 아쉬운 실정이므로 각종 행정력을 동원하여 내고장의 발전사항과 관광시설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기 바라며 「원안가결」 하였음.

6. 심사결과

【원 안 가 결】